

행 정 자 치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화재배상책임 미가입 업소 과태료 미 부과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·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아래 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.

1. 사망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2.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: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4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또한, 같은 법 제13조의3 제5항 및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

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·허가의 취소,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,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

강원도 소방본부(○○○○과)에서는 [표]와 같이 강원도 내 소재한 13개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, 행정처분 요청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강원도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현황

연번	소방서명	상호명	미가입 기간	과태료 금액 (천원)	비고
계				5,450	
1	춘천	○○○○연습장	2016.8.17.~9.22.	510	감사 지적 후 보험 가입
2	춘천	○○○○○○○춘천후평점	2016.8.24.~9.20.	280	
3	춘천	○○○	2016.8.22.~9.21.	330	
4	춘천	○○○○춘천명동점	2016.8.19.~9.21.	420	
5	춘천	○○○	2016.8.18.~9.22.	450	
6	춘천	○○○ 노래연습장	2016.9.9.~9.22.	140	
7	춘천	○○○○○닭갈비	2016.8.25.~9.22.	290	
8	철원	○○○노래주점	2016.8.15.~9.20.	510	
9	철원	○○○	2016.8.9.~9.21.	750	
10	삼척	○○○	2016.8.21.~9.19.	300	
11	삼척	○○○	2016.8.13.~9.26.	690	
12	삼척	○○○나이트클럽	2016.8.24.~9.19.	270	
13	삼척	○○○○○연습장	2016.8.20.~9.27.	510	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내에 미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13개에 대해 과태료 총 5,450천원을 부과시키고,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